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42호 2020. 10. 21.(수). 수시분

선	기관의 장
람	

## 【규 칙】

제586호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 3

## 【훈 령】

제292호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 ..... 5

제293호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66

## 【고 시】

제2020-89호 쌍신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87

제2020-186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용 고시 ..... 118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최,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3회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2020. 10. 14.)에서  
의결된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2020년 10월 21일

공주시 규칙 제586호

### 법령 적합성 확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령적합성 확보 및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기 위해 2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2조(「공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원봉사자 사기양양”을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드높이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1. 공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감면)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1급부터 3급까지</u>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p> <p>3. ~ 7.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9조(감면)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장애의 정도가 심한</u> ----- ----- -----</p> <p>3. ~ 7.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2.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2. (생 략)</p> <p>3. 자원봉사 활동평가 및 <u>자원봉사자 사기양양</u> 대책 사항 등</p> <p>4. (생 략)</p>	<p>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드높이는</u> -----</p> <p>4. (현행과 같음)</p>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2020년 10월 21일

공주시 훈령 제292호

###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시에서 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3. “청원산림보호직원”이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채용한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말한다.
  4. “근로자등”이란 공무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말한다.
  5. “인사부서”란, 근로자등의 채용 및 정원관리 등 인사와 복무를 총괄하여 지도·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속부서”란, 근로자등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공무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직종의 구분) ① 공무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사무원
2. 단순노무원
3. 도로보수원
4. 환경미화원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의 총수) 공무원의 소속부서별·직종별 정원책정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정원책정)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정원을 새로이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사부서는 소속부서의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근무내용, 채용필요성, 인원, 업무량 등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책정통보서에 따라 소속부서와 예산업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 또는 인사부서는 제2항의 정원책정 결과에 따라 예산 업무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 업무부서는 인사부서에서 책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미화원의 소속부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발령, 근무지 배치, 정원책정 요구 및 예산편성요구 등에 관해서는 청소행정 업무부서에서 한다.

### 제3장 채용

제7조(공정성 확보) ① 시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는 응시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일으키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기준)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다.

1. 관리직·서비스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
2. 업무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채용절차) ① 소속부서에서는 공무직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응시자격,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하여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사람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채용구비 서류) 공무원 채용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3. 채용신체검사서(필요시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는 시장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및 지급날짜,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서류 관리) ① 인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관리한다.

1. 정원책정 승인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2. 근로자 근로계약서 원본 : 별지 제4호 서식
3. 근로자 서약서 원본 : 별지 제5호 서식

4. 근로자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5. 근로자 관리카드 : 별지 제7호 서식
6. 인사기록관리파일 : 인사행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사기록관리 파일

② 소속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한다.

1. 근로자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2. 근로자 관리카드 : 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신분증) ① 인사부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증명서 발급) ① 공무직 재직(경력)증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으로 발급·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16조(시스템사용 권한) ① 시는 공무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권한범위,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내부행정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장 복무

제17조(복무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은 맡겨진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하게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8조(복무의무) 공무원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직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 공무원직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공무원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5. 공무원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6. 공무원직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공무원직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장의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공무원직은 공적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공무원직은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로서 소속부서의 장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출근·결근) ① 공무원직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공무원직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공무원직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공민권 권리행사 등) ① 공무원이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이나 면허 등의 효력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요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2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소속부서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출·퇴근, 휴가, 출장 등) 및 연장근로(야간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전자적인 기록·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속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근무 상황부를 작성·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 중 출·퇴근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상근무(평일 09시 출근, 18시 퇴근)시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음.
2.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등)시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여야 함.

## 제5장 인사

제23조(인사위원회 기능)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주시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공무원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시는 정기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의 주무팀장,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⑤ 소속부서는 평가단위별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사부서에서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승급) 시는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28조(휴직) ①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육아휴직은 반드시 승인하여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1년 이내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기간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1년 이내 육아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14호의 서식의 휴직원을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사부서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인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다.

제30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의 복직원을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휴직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전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직 복귀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동일·유사직종으로 복직시킬 수 있다.

## 제7장 근로조건

제31조(근로시간) ① 공무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근로계약 또는 당사자간 개별합의가 있는 경우 이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2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다.

제33조(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시는 공무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는 공무원이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족돌봄 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④ 가족돌봄 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34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시는 공무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공무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시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시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⑥ 시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⑦ 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⑧ 근로시간 단축을 한 공무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시와 공무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 ⑨ 근로시간 단축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등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장 휴일·휴가

제36조(휴일) ①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및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공무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공무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공무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소속부서의 장은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반일유급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하며,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⑧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차유급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8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3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고,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38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소속부서의 장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제36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공가)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8.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40조(생리휴가) 여성 공무원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한다.

제4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되, 유급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5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병가일수가 연 7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는 매 회마다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경조사 휴가)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43조(장기재직휴가) 소속부서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며 휴직 및 정직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산입하지 않는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제4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제9장 모성보호

제45조(모성보호시간) ①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③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직은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모성보호시간과 제47조의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

⑤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제33조의 연장근로를 명할 수 없다.

제46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여성 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 및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공무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출산 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7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제4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9조(육아시간) ① 시는 만 5세(생후 71개월)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신청하면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 있다.

②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공무원이 신청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은 제1항의 육아시간 계산에 포함된다.

③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 선택제 전환 근로자인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육아시간과 제43조의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제33조의 연장근로를 명할 수 없다.

⑥ 육아시간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일(日)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 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의 출근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제10장 임금

제51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공무원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다르게 임금종류나 지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임금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제11장 퇴직 및 해고 등

제52조(퇴직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제53조(해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거나 제28조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예산 감소 또는 채용사유 소멸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직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2.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부터 성실하게 협의한다.

제54조(해고 예고) ① 공무직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55조(정년) ① 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56조(퇴직원 제출) 공무직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을 원하는 날 10일 전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퇴직급여) ① 공무직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공무직은 별표 3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전 계속근로기간 : 근로시간 단축일(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날짜)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퇴직금 산정

2. 근로시간 단축 후 계속근로기간 : 퇴직일을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퇴직금 산정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공무직은 별표 4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58조(중간정산) ①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공무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일(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날짜)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일을 평균임금 산정시점으로 한다.

## 제12장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의 종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징계

가. 견책: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나. 감봉: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 2. 중징계

가. 정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1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태만하거나 공금 횡령·유용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제18조 제1호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8조제2호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3호에 따른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직장 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7.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제28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경우
8. 근로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0.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2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관리카드 사본
3.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제63조(징계심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징계대상 공무직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19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인 징계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19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서면 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공무직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징계 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징계결과 통보) 위원회의 징계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에게 별지 제18호의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5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6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비위행위자가 제58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경우와 그 외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제67조(징계에 따른 호봉 승급 제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1. 견책: 견책 처분이 있는 날부터 6개월
2. 감봉: 감봉 처분 기간과 감봉 처분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3. 정직: 정직 처분 기간과 정직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개월

제68조(포상의 금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포상할 수 없다.

제69조(징계 처분 기록의 말소) 공무원의 징계 처분 기록의 말소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70조(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할 수 없다.

제7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서 행정관서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징계에 의해서 면제되지 않는다.

###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72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인사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4장 교육훈련 및 성희롱의 예방

제75조(교육훈련) 시장은 근로자등의 안전·보건, 소양·직무교육,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76조(성희롱의 예방) ① 시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등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시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등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제15장 안전보건

제77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등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등이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78조(안전보건 교육) 시장은 근로자등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등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9조(건강진단) ① 시장은 근로자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근로자등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등에게 통보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진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등은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등은 1년 1회

2. 특수 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0조(작업안전용품) 근로자등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81조(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① 근로자등은 화재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위생대책) 시장은 근로자등의 보건위생을 위해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안전수칙) 공무원등 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9. 시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84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시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등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5조(재해보상) ① 근로자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업무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보상한다.

제86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등이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87조(사회보험가입) 근로자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8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공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 1】

공무직의 정원표(제5조 관련)

1. 공무직 정원(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제외)

(단위: 명)

소속부서	계	단순노무원	행정사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비 고
계	233	53	97	11	72	
본 청	150	41	50	11	48	
기획담당관	1		1			
시민소통담당관	2		2			
행정지원과	2		2			
회계과	5	4	1			
세무과	1		1			
평생교육과	10		10			
토지정보민원과	2		2			
관광과	4		4			
문화재과	5	2	3			
복지정책과	8	2	6			
경로장애인과	8	7	1			
여성가족과	10		10			
환경보호과	1		1			
자원순환과	49	1			48	
지역경제과	2		2			
도시정책과	1		1			
교통과	2	2				
도로과	16	3	2	11		
상하수도과	21	20	1			
의회사무국	2		2			
직속기관	54	12	42			
보건소	42	1	41			
농업기술센터	12	11	1			
사업소	3		3			
휴양사업소	3		3			
읍면동	24				24	
유구읍	4				4	
이인면	2				2	
탄천면	2				2	
계룡면	3				3	
반포면	3				3	
의당면	2				2	
정안면	2				2	
우성면	2				2	
사곡면	2				2	
신흥면	2				2	

## 2. 청원경찰의 정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단위: 명)

소속부서	계	경비 청원 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청원 산림 보호 직원
			소 계	지방2급 하천감시	공원 녹지 감시	주정차 일반단속	과적차량 단속	문화재보호 감시	
계	20	10	8	2	2	1	2	1	2
본 청	18	9	8	2	2	1	2	1	1
시 민 안 전 과	1	1							
회 계 과	2	2							
토지정보민원과	1	1							
문 화 재 과	3	2	1					1	
복 지 정 책 과	1	1							
자 원 순 환 과	1	1							
도 시 정 책 과	2		2		2				
건 설 과	2		2	2					
교 통 과	1		1			1			
도 로 과	2		2				2		
산림경영과	1								1
상 하 수 도 과	1	1							
사 업 소	2	1							1
문화시설사업소	1	1							
휴 양 사 업 소	1								1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4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채용년도별 퇴직금 산정방법(제56조제2항 관련)

채용년도별	근속년수	산정방법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	10년이상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가산 ○ 제62조제1항의 산출금액 × 150%
	5년이상 ~ 10년미만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가산 ○ 제62조제1항의 산출금액
	1년이상 ~ 5년미만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미가산 ○ 제62조제1항의 산출금액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미가산 ○ 제62조제1항의 산출금액

※ 군복무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 중 3년 범위 내에서 가산

【별표 4】

**채용연도별 퇴직금 산정방법** (제56조제4항 관련)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이 근로시간 단축시점 기준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

채용연도별	근속년수	산정방법
○ 2018년 12월 31일 이 전에 채용된 근로자	10년이상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가산 ○ 제62조제3항의 산출금액 × 150%
	5년이상 10년미만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가산 ○ 제62조제3항의 산출금액
	1년이상 5년미만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미가산 ○ 제62조제3항의 산출금액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		○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 미가산 ○ 제62조제3항의 산출금액

※ 군복무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 중 3년 범위 내에서 가산

【별표 5】

**징계 기준** (제6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나. 회계질서 문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다.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2.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4. 직장 이탈금지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별표 6] 와 같음			
6.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
7. 영리업무 종사 등	해고	정직	감봉	견책
8.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9.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반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10. 규정 및 명령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별표 6】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별표 5 제5호 관련)

비위의 유형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감봉	해고-정직	해고-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정직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정직	해고	해고



【별지 제2호 서식】

## 정원 책정 통보서

직 종	
근무내용	
책정인원	
그 밖에 사항	

「공주시 공무원 관리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책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 ○ 부서장 귀하



## 표준근로계약서

공주시장(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근로자” 이라 한다)는 「공주시 공무원근로자등 관리 규정」을 근거로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근로자”는 ○○○(부서명)의 ○○○○(담당업무명)과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① 근무장소(부서) : 공주시청이 관할하는 사업장 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 ② 업무내용 :
- ③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로자”의 근무요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근무일: ~ (주 일) - 근로시간: ~ - 휴게시간: ~ (시간)
  -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동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휴일근무 등 법정 초과 근로 한도 내에서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직제개편, 사무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지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휴일)

-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 합의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 ②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임금 및 퇴직금)

- ① 임금은 (기본, 시간)급(일급, 월) 원,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관련 규정 및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② 임금은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 ④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조(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공주시 공무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적용법령)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켜야 할 의무) ① “근로자”는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17조(복무원칙) 및 제18조(복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와 공주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사업주”는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제60조와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 ①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주”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제13조(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공주시장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무직 근로자 관리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세대주 및 관 계				
( )			의 ( )				
주 소				전 화	자택 :		
				특기		취미	
병 역 사 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 대 일	전 역 일	
재산상황	주 택	백만원	그외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연월일	종 별			연월일	종 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 고
기타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신분증 [ ]발급 신청서  
[ ]재발급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 안 함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 )
------	--------------------------

분실사유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

붙임	반명함판 사진 1매
----	------------

「공주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 ([ ] 발급, [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서장 성 명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재직(경력) 증명서

제 호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주소					
재직 또는 경력 기간	소속					
	직명 (직종)					
	재직기간	년	월	일	부터	일
용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확인자	소속	
	성명	
	전화	

년 월 일

공주시장 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 근무상황부(출·결근)

소속부서 :                      직종 :                      성명 :                      (20    년    월)

근무일	1	2	3	4	5	6	7
근무자							
담당자							
근무일	8	9	10	11	12	13	14
근무자							
담당자							
근무일	15	16	17	18	19	20	21
근무자							
담당자							
근무일	22	23	24	25	26	27	28
근무자							
담당자							
근무일	29	30	31				
근무자							
담당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담당자)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장)                      성명                      (서명/인)

※ 근무자 및 담당자는 자필의 서명으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 (20 년도) 임 금 대 장

부서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최 초 고용일		종사업무		산출기초액(원)				계좌번호	
												기본급 (일액/월액)		시간급 (시간당)			
구분 월별	근로 일수	근로 시간수	연장 근로 시간수	휴일 근로 시간수	야간 근로 시간수	제수당				기타	총액	공제액				영수액	영수인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계		
계																	

※ 직종여건에 맞도록 변경사용 가능

## 근무성적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종	채용일(전환일)

○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 1. 업무실적 평가(30점)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총 점			

※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불량(2)으로 구분·평가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점수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 탁월(15)·우수(12)·보통(9)·미흡(6)·불량(3)으로 구분·평가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 1점)

평가점수	점
------	---

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고객불친절( )회, 징계( )회, 경고·주의·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	---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4호 서식】

휴 직 신 청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직사유			
휴직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년 월) <i>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성명, 생년월일 표기</i>		
<p>위 본인은 「공주시 공무원 관리규정」제 조 제 항제 호에 따라 휴직을 신청합니다.</p> <p>붙 임 : 증명서류 1부.</p> <p style="margin-top: 1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위 신청인 :</p> <p style="margin-top: 40px; font-size: 1.2em;">공 주 시 장      귀 하</p>			



【별지 제16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직종	
		한자		생년 월일		재직 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징계의결요구권자    인</p>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① 소속 부서	② 해당 직무
③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p>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제65조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별지 제19호 서식】

##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글		②소 속	
		한자		③직 종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p>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한다.</p> <p>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한다.</p> <p>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p>			
<p>「공주시 공무원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인사위원회위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절취선)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직종	
	④주소				
<p>본인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인)</p> <p>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p>					

【별지 제20호 서식】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 종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2020년 10월 21일

공주시 훈령 제293호

##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인사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복무 등을 지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소속부서에서 채용하거나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제2장 채용

### 제1절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

제4조(채용기준 등의 수립) ① 인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통기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 ① 소속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접수받은 인사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채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소속부서와 예산 부서에 통보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를 하여 채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예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속부서는 인사부서의 사전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단, 인건비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연중 수개월에 걸쳐 사업이 완료되며, 총 근로일이 30일 미만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 제6조(원칙)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거쳐 인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② 소속부서의 장은 회계연도 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수행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채용 목적에 합당한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채용

제7조(채용) 소속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 제8조(채용절차)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소속기관별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소속부서의 장은 결원에 따른 신속한 인력확보, 농촌지역 인력확보 여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격, 채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하는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경우
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3. 예상치 못한 휴직연장, 천재지변, 재해발생으로 긴급히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 ④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인원
2. 업무내용
3. 응시자격
4. 남녀 고용평등 및 장애인 고용 등에 관한 사항 등
- ⑤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⑥ 면접시험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적격성 심사 평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면접위원 구성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성 : 3인 이상(외부위원 3분의 1 이상)
2. 자격 : 소속부서 외 팀장급 이상
- ⑥ 면접시험의 평정 및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을 따른다.

제9조(채용구비서류)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시에 한함)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근로계약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근로계약 체결)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방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종료)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1~9)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장 인사 관리

제12조(근로자명부 작성) 소속부서의 장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로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 발급) ① 기간제근로자 재직(경력)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수

제14조(보수의 지급기준) 소속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보수액을 매월 지정한 날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기준 또는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험의 가입)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공제)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의 부담분 등

제17조(퇴직급여)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퇴직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제4장 복무

제18조(복무) 기간제근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속부서의 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이행조건 및 근로서약서의 제반 사항을 준수한다.

제19조(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③ 기간제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노동자의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④ 소속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할 수 없다.

제21조(근무 상황관리)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근무상황기록부 및 시간외근무기록부를 갖추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연차 유급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계속해서 노동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는 9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2회를 1일로 계산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매월 휴가 발생일부터 다음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연차 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종료일의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제23조(특별 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4조(임산부의 보호 등) ①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및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한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기간제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5조(공가)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때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6조(병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타인에

모범이 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제5장 교육

제28조(교육훈련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갈음 한다.

1. 담당 직무와 관련된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
4.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② 기간제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장 안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29조(안전관리) ① 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안전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 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근로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속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소속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재해보상)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제보상을 행한다.

제3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① 시 및 기간제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부서 및 소속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 및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 제7장 보칙

제33조(손해배상) 기간제근로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주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소속부서명		채용기간				신청인원				담당업무					
인력 운용 현황	공무직 정.현원	직 종													
		결과원													
		정 원													
		현 원													
	기 간 제 근 로 자 채용현황	연평균 인 원	당해 연도 월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전 검토 사항	사업현황	사업명							재원	국비/도비 비율%					
		사 업 규 모	$m^2/평/식$						사업 기간						
	기존 인력 활용 여부														
채용 계획	채용 목적 및 필요성								채용 방법						
	자격기준 및 업무내용														
	인 건 비 소요예산	예산액					천원	재원	국비/도비 비율%						
		구 분	소요액				산출근거								
		보 수					천원								
		수 당					천원								
고 령 자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단시간근로자 가능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담당자	행정8급 000(전화0000)					팀장				행정5급 000(전화0000)					

※ 소속부서는‘과’단위 이상으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제5조제2항 관련)

소속부서명	채용기간		신청인원		승인인원
사 업 명			재원		
업무내용					
채용승인 인원현황	총인원	주 40시간 근로자 (고령자제외)	고령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고령근로자 (단시간적용)
승인사유					
<p>「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인사부서의 장 000</p>					

[별지 제3호서식]

### 기간제근로자 채용 적격성 심사 평정표(제8조제6항 관련)

필적 감정 용기 재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 종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나. 채용분야 지식과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 5명 중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 표준근로계약서

공주시장(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 근로자 ○○○ (이하 “근로자” 이라 한다)는 「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근거로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근로자”는 ○○○(부서명)의 ○○○○(담당업무명)과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기간)

- 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상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① 근무장소(부서) : 공주시청이 관할하는 사업장 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 ② 업무내용 :
- ③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로자”의 근무요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근무일 : ~ (주 일) - 근로시간 : ~ - 휴게시간 : ~ (시간)
  -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동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무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휴일근무 등 법정 초과근로 한도 내에서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직제개편, 사무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

하여 “근로자”의 근무지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휴일)

-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의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 합의한 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 ②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임금 및 퇴직금)

- ① 임금은 (기본, 시간)급(일급, 월) 원,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관련 규정 및 「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 ② 임금은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금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

- ④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조(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적용법령)**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켜야 할 의무)** ① “근로자”는 「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복무원칙) 및 제18조(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와 공주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공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를 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제12조(해석)**

- ①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주”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제13조(계약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근로자〕

공주시장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 재 직(경력) 증 명 서(제13조제1항 관련)

발급 관리	소속부서	팀 장	담 당 자	연 락 처
		행정6급 000 (인)	행정7급 000 (인)	041)840-0000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한 자			
	주 소				
재 직 사 항	소 속				
	근무형태	기간제근로자	근로형태	상근 또는 단시간근로 (월00시간)	
	기 간	2000.01.01. ~ 현재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 쌍신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2018.08.16.) 및 제2018-173호(2018.10.15.)로 고시된 쌍신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공 주 시 장

###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쌍신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기정)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변경)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225,755㎡

(변경) 227,152㎡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경남권에 집중된 자동차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양시 및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과 더불어 중부권 자동차 복합단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번지
- 나. 성명 : (주)세종 대표이사 박순현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가. 개발기간 : (기정) 2018년 ~ 2023년  
(변경) 2018년 ~ 2025년
-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민간개발

###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 가. 주요유치업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유치업종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36,587	증) 1,109	137,696	1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6,204	증) 12	16,216	11.8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45,613	증) 355	45,968	33.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74,770	증) 742	75,512	54.8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 6. 토지이용계획 (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225,755	증) 1,397	227,152	100.0	
산업시설용지	136,587	증) 1,109	137,696	6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6,204	증) 12	16,216	7.1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45,613	증) 355	45,968	2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74,770	증) 742	75,512	33.3	
지원시설용지	22,222	감) 14	22,208	9.8	
공공시설용지	66,946	증) 302	67,248	29.6	
주차장	2,072	-	2,072	0.9	주차장 1개소
유수지	4,261	-	4,261	1.9	유수지 1개소
도 로	25,022	증) 150	25,172	11.1	중로 3개소
공 원	1,934	-	1,934	0.8	공원 1개소
완충녹지	33,657	증) 152	33,809	14.9	완충녹지 4개소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나.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 계재생략

##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 가. 교통시설계획

#### 1) 도로

##### ○ 도로 총괄표

구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기정	4	1,437 (3,209)	25,022 (31,260)	-	-	-	2	1,006	20,244	2	431 (3,209)	4,778 (31,260)
	변경	4	1,437 (3,209)	25,172 (31,253)	-	-	-	2	1,006	20,401	2	431 (3,209)	4,771 (31,253)
중로	기정	3	1,240	23,228	-	-	-	2	1,006	20,244	1	234	2,984
	변경	3	1,240	23,385	-	-	-	2	1,006	20,401	1	234	2,984
소로	기정	1	197 (3,209)	1,794 (31,260)	-	-	-	-	-	-	1	197 (3,209)	1,794 (31,260)
	변경	1	197 (3,209)	1,787 (31,253)	-	-	-	-	-	-	1	197 (3,209)	1,787 (31,253)

※( )는 금회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는 사업구역 외 소로3류(국지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쌍1	19	집산 도로	438	소로3-2-2	중로2-쌍2	일반	-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면적 변경
변경	중로	2	쌍2	19	집산 도로	568	중로2-쌍1	중로3-쌍1	일반	-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면적 변경
기정	중로	3	쌍1	12	국지 도로	234	중로2-쌍2	남측구역계 쌍신동 9-8	일반	-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변경	소로	3	2-2	6~15	국지 도로	3,20 9	중로1-4	대로2-2	일반	-		면적 변경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쌍1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정: 쌍신동 464번지 일원</li> <li>변경: 쌍신동 464-1번지 일원</li> </ul>	2,072	-	2,072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1개소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공간시설계획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쌍1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정: 쌍신동 산1-1번지 일원</li> <li>변경: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li> </ul>	1,934	-	1,934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1개소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 2) 녹지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33,657	증) 152	33,809		4개소
변경	쌍1	녹지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쌍신동 산1-1번지 일원</li> <li>• 변경: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li> </ul>	19,095	증) 156	19,251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변경	쌍2	녹지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신동 2번지 일원</li> </ul>	9,232	증) 2	9,234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기정	쌍3	녹지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성면 목천리 143-1번지 일원</li> </ul>	2,474	-	2,474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변경	쌍4	녹지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우성면 목천리 991-2번지 일원</li> <li>• 변경: 우성면 목천리 991-5번지 일원</li> </ul>	2,856	감) 6	2,850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다. 방재시설계획

### 1) 우수지

####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쌍1	우수지	저류지	공주시 쌍신동 9-9번지 일원	4,261	-	4,261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1개소

##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 없음)

###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생활용수(㎡/일)	공업용수(㎡/일)	용수공급량(㎡/일)
총 계	40.7	0	40.7
산업시설용지	32.7	0	32.7
지원시설용지	8.0	0	0.8

※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은 실수요 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계획이 없으므로 단지 내 공업용수 사용 및 폐수발생량 산정은 제외

나. 하수처리계획

구 분	생활용수량 (m <sup>3</sup> /일)	유효수율 (%)	오수전환율 (%)	오수발생량 (m <sup>3</sup> /일)	지하수 유입량 (m <sup>3</sup> /일)	일최대 오수발생량 (m <sup>3</sup> /일)
사업지구	40.7	83	90	30.4	3.0	33.4

다. 전력공급계획

구 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합계
변압기용량(kVa)	6,194	5,328	11,522
구성비(%)	53.7	46.3	100.0
최대전력수요(kW)	4,645	3,689	8,334
구성비(%)	55.7	44.3	100.0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면적(m <sup>2</sup> )	원단위	수요량(회선)	비 고	
합 계	158,809	-	205		
산업 시설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C30)	16,204	1회선/1,000m <sup>2</sup>	17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45,613	1회선/1,000m <sup>2</sup>	46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H52)	74,770	1회선/1,000m <sup>2</sup>	75	
지원시설용지	22,222	0.3회선/100m <sup>2</sup>	67		

마. 에너지공급계획

구 분	총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비 고
산업시설용지	43,504	6.26	
직접열사용량(Gcal/년)	28,360	-	
간접열사용량(Gcal/년)	15,144	6.26	
지원시설용지	3,654	5.15	
합 계	47,158	11.41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가.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상면적(m)		편입면적(m)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 계 (114필지)					572,490	247,533	225,755	227,152						
1	쌍신동	1	1	전	1,417	1,417	1,417	1,417	최명애	공주시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2	쌍신동	1-2	1-2	전	1,116	1,116	1,116	1,116	김태경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	우성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6	근저당권	
											우성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6	지상권	
3	쌍신동	1-3	1-3	전	2,200	2,200	2,200	2,200	박현호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	쌍신동	1-7	1-7	임	3,457	2,492	971	-						
4	쌍신동		1-10	임		965		965	국 (국토교통부)					
5	쌍신동	1-8	1-8	임	664	664	664	664	국 (국토교통부)					
6	쌍신동	1-9	1-9	임	1,541	1,541	1,541	1,541	국 (국토교통부)					
7	쌍신동	2	2	답	4,449	4,449	4,449	4,449	조영복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8	쌍신동	3-1	3-1	구	1,101	1,101	1,101	1,101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이원례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55번길 25(태평동)				
9	쌍신동	3-2	3-2	답	1,372	1,372	1,372	1,372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이원례	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55번길 25(태평동)				
10	쌍신동	3-3	3-3	답	198	198	198	198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이원례	대전시 중구 태평동 266-5				
11	쌍신동	4	4	대	1,507	1,507	1,507	1,507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12	쌍신동	4-1	4-1	임	77	77	77	77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3	쌍신동	4-2	4-2	임	105	105	105	105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4	쌍신동	5-1	5-1	답	2,975	2,975	2,975	2,975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이원례	대전시 중구 태평동 266-5				
15	쌍신동	5-2	5-2	답	1,197	1,197	1,197	1,197	오희록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				
16	쌍신동	5-6	5-6	천	417	417	417	417	국 (기획재정부)					
17	쌍신동	5-7	5-7	답	526	526	526	526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이원례	대전시 중구 태평동 266-5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상면적(m)		편입면적(m)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	쌍신동	5-8	5-8	답	3,008	3,008	3,008	3,008	김광남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				
									이원례	대전시 중구 태평동 266-5				
19	쌍신동	6-1	6-1	답	3,206	3,206	3,206	3,206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공주신관지점)	근저당권	
20	쌍신동	6-2	6-2	잡	979	979	979	979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21	쌍신동	7-1	7-1	답	466	466	466	466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668 현대홈타운5차 508-304				
22	쌍신동	7-2	7-2	답	2,238	2,238	2,238	2,238	김번겸	서울 관악구 봉천동 239-1 호암생활관동관 307				
23	쌍신동	8	8	답	2,638	2,638	2,638	2,638	임현임	공주시 옥룡동 280-8 백제맨션 107호				
24	쌍신동	9-1	9-1	답	2,122	2,122	2,122	2,122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합동 새마을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근저당권	
											합동 새마을금고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87-20	지상권	
25	쌍신동	9-5	9-5	전	1,114	1,114	1,114	1,114	김영천	공주군 공주읍 금학동 115				
26	쌍신동	9-6	9-6	천	473	473	473	473	국 (국토교통부)					
27	쌍신동	9-7	9-7	전	479	479	479	479	김영천	공주군 공주읍 금학동 115				
28	쌍신동	9-8	9-8	전	456	456	456	456	김영천	공주군 공주읍 금학동 115				
29	쌍신동	9-9	9-9	전	1,339	1,339	1,339	1,339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30	쌍신동	424-6	424-6	천	18,060	18,060	1,675	1,675	국 (국토교통부)					
-	쌍신동	443-1	443-1	제	7,722	5,304	2,404	-						
31	쌍신동		443-2	제										2,418
-	쌍신동	464	464	임	6,068	5,147	5,143	5,147	국 (기획재정부)					
32	쌍신동		464-1	임										717
-	쌍신동		464-2	임										
-	쌍신동	산1-1	산1-1	임	103,550	2,832	99,387	-						
33	쌍신동		산1-12	임										100,718
34	쌍신동	산1-4	산1-4	임	973	973	973	973	(☞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	귀산리	59	59	답	1,326	1,202	124	-						
35	귀산리		59-1	답										124
-	귀산리	62-4	62-4	임	22,215	20,792	1,421	-						
36	귀산리		62-12	임										1,423
									국 (국토교통부)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상면적(m)		편입면적(m)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37	귀산리	62-7	62-7	임	516	516	516	516	국 (국토교통부)				
-	귀산리	62-8	62-8	임	259	6	253	-	국 (국토교통부)				
38	귀산리		62-13	임		253		253					
39	귀산리	62-9	62-9	임	12	12	12	12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	귀산리	62-11	62-11	임	1,187	138	1,049	-	국 (국토교통부)				
40	귀산리		62-14	임		1,049		1,049					
41	귀산리	63-1	63-1	전	440	440	440	440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42	귀산리	63-2	63-2	도	192	192	192	192	최길동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43	귀산리	63-3	63-3	전	164	164	164	164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44	귀산리	63-4	63-4	전	26	26	26	26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45	귀산리	63-5	63-5	도	10	10	10	10	최길동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	-	63-6	63-6	전	173	120	53	-	국 (국토교통부)				
46	귀산리		63-7	전		53		53					
-	귀산리	64	64	답	2,102	2,076	25	-	국 (국토교통부)				
47	귀산리		64-3	답		26		26					
-	귀산리	64-1	64-1	임	901	339	561	-	국 (국토교통부)				
48	귀산리		64-4	임		562		562		청송삼씨광주부윤공파 선산종회	선산군 선산읍 이문리 80-22		
49	귀산리	64-2	64-2	임	138	138	138	138	국 (국토교통부)				
-	귀산리	207-8	270-8	도	4,353	4,257	52	-	국 (국토교통부)				
50	귀산리		270-9	도		50		50					
-	귀산리		270-10	도		46		-					
-	귀산리	274-2	274-2	천	18,298	17,264	85	-	국 (국토교통부)				
-	귀산리		274-3	천		936		-					
51	귀산리		274-4	천		98		98					
-	귀산리	산22-5	산22-5	임	26,748	656	26,121	-	국 (국토교통부)				
52	귀산리		산22-14	임		26,092		26,092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상면적(m)		편입면적(m)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53	목천리	82-10	82-10	답	251	251	251	251	장교순	공주시 쌍신동 373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산성동 187-19	근저당권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동 21-5	지상권
54	목천리	84-4	84-4	전	99	99	99	99	국 (기획재정부)				
55	목천리	84-5	84-5	전	140	140	140	140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56	목천리	84-7	84-7	전	52	52	52	52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57	목천리	85-2	85-2	답	17	17	17	17	장용순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49-5, 108동 1102회(신관동, 대동다숲아파트)			
58	목천리	88-2	88-2	전	287	287	287	287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59	목천리	88-3	88-3	전	153	153	153	153	이인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947 롯데캐슬루니아아파트 116-802			
60	목천리	89-1	89-1	전	33	33	33	33	유성은천 주식회사	대덕군 유성면 봉명리 480			
61	목천리	89-2	89-2	답	60	60	60	60	장용순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49-5, 108동 1102회(신관동, 대동다숲아파트)			
62	목천리	89-3	89-3	답	496	496	496	496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3	목천리	90-3	90-3	답	364	364	364	364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4	목천리	90-7	90-7	답	96	96	96	96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5	목천리	90-4	90-4	답	169	169	169	169	장용순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49-5, 108동 1102회(신관동, 대동다숲아파트)			
66	목천리	90-5	90-5	답	1,255	1,255	1,255	1,255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7	목천리	91-3	91-3	답	595	595	595	595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8	목천리	91-7	91-7	답	106	106	106	106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69	목천리	91-4	91-4	답	228	228	228	228	장용순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49-5, 108동 1102회(신관동, 대동다숲아파트)			
70	목천리	91-5	91-5	답	1,432	1,432	1,432	1,432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71	목천리	92-2	92-2	답	400	400	400	400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72	목천리	92-3	92-3	답	218	218	218	218	국 (기획재정부)				
73	목천리	92-4	92-4	답	1,200	1,200	1,200	1,200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74	목천리	92-5	92-5	잡	1,617	1,617	1,617	1,617	국 (기획재정부)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상면적(m)		편입면적(m)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75	목천리	143-1	143-1	답	983	983	942	942	장교순	공주시 쌍신동 373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산성동 187-19	근저당권
											공주농업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길 19(금성동)	지상권
-	목천리		143-2	구		26		-					
76	목천리	143-2	143-6	구	169	134	134	134	국 (국토교통부)				
-	목천리		143-7	구		9		-					
-	목천리		144-2	임		10,659		-					
77	목천리	144-2	144-11	임	11,303	644	644	644	국 (국토교통부)				
-	목천리		144-4	임		6		-					
78	목천리	144-4	144-12	임	153	147	147	147	국 (국토교통부)				
-	목천리		144-5	임		126		-					
79	목천리	144-5	144-13	임	8,136	8,010	8,010	8,010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	목천리		144-6	임		82		-					
80	목천리	144-6	144-14	임	1,581	1,499	1,499	1,499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4			
-	목천리		144-10	임		138		-					
81	목천리	144-10	144-15	임	939	801	801	801	국 (국토교통부)				
-	목천리		930-1			136,163		-					
82	목천리	930-1	930-11	천	136,994	197	852	197	국 (국토교통부)				
83	목천리		930-13	천		634		634	국 (국토교통부)				
84	목천리	933-2	933-2	도	468	468	468	468	국 (국토교통부)				
-	목천리		973-2	제		68,137		-					
85	목천리	973-2	973-4	제	68,973	31	837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86	목천리		973-6	제		805		805	국 (농림축산식품부)				
87	목천리		989	잡		1,064		1,064	국 (기획재정부)				
88	목천리	989	989-2	잡	1,190	126	1,190	126	국 (기획재정부)				
89	목천리		989-1	답		508		508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씨이언스빌 5-201			
90	목천리	989-1	989-3	답	701	193	701	193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씨이언스빌 5-201			
91	목천리		990	답		2,399		2,399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92	목천리	990	990-2	답	2,846	447	2,846	447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93	목천리		990-1	답		344		344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94	목천리	990-1	990-3	답	486	142	486	142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상면적(m)		편입면적(m)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	목천리		991	전		89		-						
95	목천리	991	991-3	전	2,390	1,681	2,301	1,681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근저당권	
	귀산리 18									우성농업 협동조합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6	지상권		
96	목천리	991	991-6	전	2,390	620	2,301	620	김순남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우성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18	근저당권	
	귀산리 18									우성농업 협동조합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5-6	지상권		
-	목천리	991-1	991-1	전	698	29	669	-						
97	목천리		991-4	전		417		417	박영수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5				
98	목천리		991-7	전		252		252	박영수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5				
-	목천리	991-2	991-2	전	539	26	512	-						
99	목천리		991-5	전		288		288	박영수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5				
100	목천리		991-8	전		225		225	박영수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5				
101	목천리	992	992	전	2,023	2,023	2,023	2,023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권	
	백제큰길 2497									공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지상권		
102	목천리	992-1	992-1	답	20	20	20	20	국 (기획재정부)					
103	목천리	992-2	992-2	전	26	26	26	26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권	
	백제큰길 2497									공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지상권		
104	목천리	992-3	992-3	전	215	215	215	215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권	
	백제큰길 2497									공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지상권		
-	목천리	994	994	전	1,131	982	145	-						
105	목천리		994-2	전		149		149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근저당권	
										공주중앙 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 공주시 중동 147-102	지상권		
-	목천리	994-1	994-1	전	2,179	1,843	335	-						
106	목천리		994-3	전		336		336	김종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259 신성천안미소지움아파트 106-1005				
-	목천리	995	995	잡	4,030	731	3,298	-						
107	목천리		995-2	잡		3,299		3,299	국 (기획재정부)					
-	목천리	1017	1017	천	25,066	18,918	2,514	-						
108	목천리		1017-16	천		1,149		706	국 (국토교통부)					

연번	리	지번		지목	대상면적(m)		편입면적(m)		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09	목천리		1017-17	천		5,200		1,808	국 (국토교통부)					
-	목천리	1017-1	1017-1	잡	1,993	1,054	952	-						
110	목천리		1017-15	잡		939		939	국 (기획재정부)					
-	목천리	1019	1019	제	23,118	22,702	415	-						
111	목천리		1019-5	제		416		416	국 (국토교통부)					
112	목천리	1019-1	1019-1	전	377	377	257	257	이정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씨아일랜드 5-201				
-	목천리	1069	1069	구	6,225	4,755	1,375	-						
113	목천리		1069-2	구		1,470		1,470	국 (국토교통부)					
114	쌍신동	0-4가 (미등기)	465	천	-	698	698	698	국					

### 나. 수용·사용할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	
								성명	주소
1	쌍신동	1	밤나무1		R20.0*H5.0	48.00	주	최명애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2	쌍신동	1	밤나무2		R15.0*H3.0	13.00	주	최명애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3	쌍신동	1	대추나무		R15.0*H3.0	2.00	주	최명애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4	쌍신동	1	백련초		R10.0*H5.0	60.00	주	최명애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5	쌍신동	1	양수시설			1.00	식	최명애	옥룡동 103 옥룡주공아파트 205-1406
6	쌍신동	1-2 1-3	관정			1.00	식	김태경/ 박현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7	쌍신동	1-2 1-3	감나무		R20.0*H4.0	22.00	주	김태경/ 박현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8	쌍신동	1-2 1-3	매실나무		R20.0*H4.0	3.00	주	김태경/ 박현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9	쌍신동	1-2 1-3	대추나무		R5.0*H2.0	83.00	주	김태경/ 박현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10	쌍신동	1-2 1-3	두릅나무		R5.0*H2.0	70.00	주	김태경/ 박현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11	쌍신동	1-2 1-3	옻나무1		R20.0*H6.0	45.00	주	김태경/ 박현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12	쌍신동	1-2 1-3	옻나무2		R20.0*H7.0	15.00	주	김태경/ 박현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13	쌍신동	1-2 1-3	옻나무3		R15.0*H5.0	10.00	주	김태경/ 박현호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42/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69-1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	
								성명	주소
14	쌍신동	1-9	계단	콘크리트	1.0*30.0	30.00	m <sup>2</sup>	국 (국토교통부)	
15	쌍신동	4	비료저장시설	비닐덮개	7.0*3.5	24.50	m <sup>2</sup>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6	쌍신동	4	은행나무		R20.0*H8.0	2.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7	쌍신동	4	사철나무		R3.0*H1.5	6.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8	쌍신동	4	벚나무1		R10.0*H2.0	1.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9	쌍신동	4	벚나무2		R10.0*H4.0	1.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20	쌍신동	4	조경수		R20.0*H4.0	2.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21	쌍신동	4	느티나무		R20.0*H4.0	1.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22	쌍신동	4	매실		R20.0*H4.0	1.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23	쌍신동	4	장미		R3.0*H1.5	2.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24	쌍신동	4	뽕나무		R15.0*H4.0	5.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25	쌍신동	4	오동나무		R15.0*H5.0	1.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26	쌍신동	5-8	관정			1.00	식	김광남/ 이원례	대전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55번길25(태평동)
27	쌍신동	5-8	전기시설			1.00	식	김광남/ 이원례	대전 서구 월평동 300 무지개아파트 101-1001/대전광역시 중구 수침로55번길25(태평동)
28	쌍신동	6-1	관정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29	쌍신동	6-1	인삼재배시설	목재,차광막		1,768.0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0	쌍신동	6-1	밤나무		R25.0*H6.0	25.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1	쌍신동	6-1	매실나무		R5.0*H1.0	2.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2	쌍신동	6-1	조경수		R15.0*H4.0	4.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3	쌍신동	6-2	공장	일반철골구조 철골트러스		270.11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4	쌍신동	6-2	목공기계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5	쌍신동	6-2	집진기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6	쌍신동	6-2	드릴머신1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7	쌍신동	6-2	드릴머신2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38	쌍신동	6-2	컴프레셔1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	
								성명	주소
									191(공주시쌍신동)
39	쌍신동	6-2	컴프레서2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0	쌍신동	6-2	컴프레서3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1	쌍신동	6-2	컴프레서4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2	쌍신동	6-2	공구선반 (공구포함)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3	쌍신동	6-2	자제선반 (자제포함)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4	쌍신동	6-2	잡자재1 (목재등)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5	쌍신동	6-2	2층창고	일반철골구조	(4.0*14.0)+ (7.0*5.0)	91.0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6	쌍신동	6-2	계단 (창고포함)	철제/선라이 트지붕	1.2*11.0	13.2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7	쌍신동	6-2	차양1	철제/ 유리지붕	1.5*3.0	4.5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8	쌍신동	6-2	화단1	자연석	15.0*1.2	18.0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49	쌍신동	6-2	화단2	자연석	20.0*1.2	24.0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0	쌍신동	6-2	관정보호사(철 제덮개포함)	철제	1.2*1.2	1.44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1	쌍신동	6-2	정화조			12.00	인용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2	쌍신동	6-2	2층(가정집)	일반철골구조		119.79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3	쌍신동	6-2	창고1	샌드위치판 넬조지붕	3.3*6.0	19.8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4	쌍신동	6-2	창고2(바닥콘크 리트포장포함)	파이프/함석	7.0*8.0	56.0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5	쌍신동	6-2	창고2(바닥콘크 리트포장포함)	파이프/함석	7.0*8.0	56.0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6	쌍신동	6-2	컨테이너	철제	4.0*9.0	36.0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7	쌍신동	6-2	외등			4.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8	쌍신동	6-2	철제선반	파이프/철제	5.0*H2.0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59	쌍신동	6-2	잡자재2	철제빔 샌드 위치판넬 파 이프외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0	쌍신동	6-2	울타리1	목제	H1.5	58.00	m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1	쌍신동	6-2	울타리2	파이프 함석	H2.5	26.00	m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	
								성명	주소
62	쌍신동	6-2	견사	PE		3.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3	쌍신동	6-2	계사울타리	철제, 함석, 차광망	H1.0	25.00	m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4	쌍신동	6-2	계방사장	파이프, 그물	5.0*3.0	15.0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5	쌍신동	6-2	계장	파이프, 그물	1.5-1.8	2.70	m <sup>2</sup>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6	쌍신동	6-2	구상나무		R10.0*H2.0	8.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7	쌍신동	6-2	밤나무		R20.0*H5.0	1.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8	쌍신동	6-2	엄나무		R10.0*H3.0	5.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69	쌍신동	6-2	반송		R10.0*H1.5	20.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0	쌍신동	6-2	옻나무		R10.0*H2.0	8.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1	쌍신동	6-2	은행나무		R30.0*H10.0	3.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2	쌍신동	6-2	대추나무		4년생	10.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3	쌍신동	6-2	백일홍		10년생	1.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4	쌍신동	6-2	감은비나무		10년생	1.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5	쌍신동	6-2	구지뽕나무		4년생	2.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6	쌍신동	6-2	블루베리		3년생	2.00	주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7	쌍신동	6-2	차양2		2.6*0.8	5.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8	쌍신동	6-2	차양3		2.0*0.8	2.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79	쌍신동	6-2	차양4		2.0*0.4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80	쌍신동	6-2	CCTV			3.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81	쌍신동	6-2	간판		3.5*1.0	1.00	식	오규응	충청남도 공주시 심산길 191(공주시쌍신동)
82	쌍신동	9-1	골재기계1			1.00	식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83	쌍신동	9-1	골재기계2			1.00	식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84	쌍신동	9-1	골재기계3			1.00	식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85	쌍신동	9-1	컨테이너1	철제	3.0*6.0	18.00	m <sup>2</sup>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	
								성명	주소
86	쌍신동	9-1	컨테이너2	철제	3.0*6.0	18.00	m <sup>2</sup>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87	쌍신동	9-1	컨테이너3 (에어컨 실외기포함)	철제	3.0*6.0	18.00	m <sup>2</sup>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88	쌍신동	9-1	세륜기			1.00	식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89	쌍신동	9-1	컨베이어벨트			1.00	식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90	쌍신동	9-1	잡자재			1.00	식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91	쌍신동	9-1	골재		30.0*50.0	1,500.00	m <sup>2</sup>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92	쌍신동	9-1	바닥포장	자갈	30.0*25.0	750.00	m <sup>2</sup>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197번길 40-1(판교동)
93	쌍신동	9-9	감나무		R20.0*H3.0	9.00	주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94	쌍신동	9-9	모과나무		R15.0*H3.0	1.00	주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95	쌍신동	9-9	복숭아		R20.0*H4.0	1.00	주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96	쌍신동	9-9	울타리	철제,그물망	H1.8	90.00	m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97	쌍신동	9-9	관정1			1.00	식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98	쌍신동	9-9	관정2			1.00	식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99	쌍신동	9-9	관정3			1.00	식	이성관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
100	쌍신동	443-2	진입로	콘크리트	3.0*3.0	9.00	m <sup>2</sup>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7번길 40-1(판교동)
101	쌍신동	443-2	밤나무		R20.0*H4.0	8.00	주	임윤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7번길 40-1(판교동)
102	쌍신동	산1-4	주택	벽돌/슬라브	13.0*8.0	104.00	m <sup>2</sup>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03	쌍신동	산1-4	축백		R10.0*H5.0	2.00	주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04	쌍신동	산1-4	바닥포장1	콘크리트	6.0*13.0	78.00	m <sup>2</sup>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05	쌍신동	산1-4	바닥포장2	콘크리트	1.5*8.0	12.00	m <sup>2</sup>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06	쌍신동	산1-4	화단	자연석	3.0*13.0	39.00	m <sup>2</sup>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07	쌍신동	산1-4	계단	블록,콘크리트	0.8*6.0	4.80	m <sup>2</sup>	(주)세종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쌍신동 4
108	귀산리	63-2 63-3 63-7	골재		100.0*80.0	8,000.00	m <sup>2</sup>	최길동/ 이정숙	공주군 우성면 귀산리 42/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57-19 싸이언스빌 5-201
109	목천리	90-5	폐전기시설			1.00	식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	
								성명	주소
110	목천리	90-5 91-5	밤나무		R20.0*H3.0	1.00	주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111	목천리	90-5 91-5	매실나무		R20.0*H3.0	7.00	주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112	목천리	90-5 91-5	벚나무		R20.0*H3.0	2.00	주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113	목천리	90-5 91-5	뽕나무		R20.0*H3.0	2.00	주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114	목천리	91-5	전기시설			1.00	식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115	목천리	91-5	양수시설			1.00	식	김정자	공주시 신관동 257-15
116	목천리	92-4	진입로	콘크리트	3.0*3.0	9.00	m <sup>2</sup>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117	목천리	143-6	관정			1.00	식	국 (국토교통부)	
118	목천리	990	진입로	콘크리트	3.0*3.0	9.00	m <sup>2</sup>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119	목천리	990	은행나무		R20.0*H3.0	250.00	주	이은호	공주시 금흥동 115
120	목천리	990-1	VH(계사)	파이프 비닐 보온덮개	5.60*31.0	168.0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1	목천리	990-1	견사	샌드위치판 넬조지붕	1.20*1.20	1.44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2	목천리	991-3	VH(계사)1	파이프 비닐 보온덮개	6.0*35.0	210.0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3	목천리	991-3	VH(계사)2	파이프 비닐 보온덮개	6.0*36.0	216.0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4	목천리	991-3	VH(계사)3	파이프 비닐 보온덮개	6.0*35.0	210.0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5	목천리	991-3	VH(계사)4	파이프 비닐 보온덮개	8.6*34.0	272.0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6	목천리	991-3	컨테이너1	철제	3.0*9.0	27.0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7	목천리	991-3	계장	철제	1.0*1.8	1.8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8	목천리	991-3	잡자재	스레트 물통 등		1.00	식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29	목천리	991-3	컨테이너2(판넬 지붕포함)	철제	3.0*9.0	27.0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0	목천리	991-3	보안시설 (CCTV포함)			1.00	식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1	목천리	991-3	외등			1.00	식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2	목천리	991-3	창고	샌드위치판 넬조지붕	3.4*3.3	37.02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	
								성명	주소
133	목천리	991-3	자동사료급여기 (피드번)		10t	3.00	식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4	목천리	991-3	배나무		R20.0*H5.0	6.00	주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5	목천리	991-3	밤나무		R20.0*H5.0	1.00	주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6	목천리	991-3	전기시설			1.00	식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7	목천리	991-3	바닥포장	자갈,포석	30.0*20.0	600.0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8	목천리	991-4	VH(계사)	파이프 비닐 보온덮개	8.6*34.0	292.4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39	목천리	991-4	관정(판넬보호 지붕포함)			1.00	식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40	목천리	991-4	견사	철제,스래트	1.2*4.0	4.80	m <sup>2</sup>	강승구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36, 603동606호(신관동, 주공아파트6단지)
141	목천리	992	석축		H7.0	110.00	m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142	목천리	992	맨홀	철근콘크리트	Ø1m	3.00	식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143	목천리	992	수목미상		R10.0*H3.0	6.00	주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144	목천리	992	이동식화장실			1.00	식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145	목천리	992	바닥포장	콘크리트	15.0*10.0	150.00	m <sup>2</sup>	김종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백제큰길 2497
146	목천리	1017- 15	관정			1.00	식	국 (국토교통부)	

#### 다. 전력주소서

연번	리	지번	지장물명	전주번호	규격(m)	단위	전력주 수량	전력지주 수량	소관청	비고
1	쌍신동	산1-12	전력지주	죽당선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	쌍신동	산1-12	전력주	죽당선63R1L12	16	본	1		한국전력공사	
3	쌍신동	산1-12	전력주	죽당선63R1L11	16	본	1		한국전력공사	
4	쌍신동	산1-12	전력주	죽당선63R1L10	16	본	1		한국전력공사	
5	쌍신동	산1-12	전력주	죽당선63R1L9R1	10	본	1		한국전력공사	

6	쌍신동	443-2	전력주	죽당선63R1L9	16	본	1		한국전력공사	
7	쌍신동	443-2	전력주	죽당선69R1	14	본	1		한국전력공사	
8	쌍신동	443-2	전력주	죽당선63R1L7)	14	본	1		한국전력공사	
9	쌍신동	443-2	전력주	죽당선63R1L6	16	본	1		한국전력공사	
10	쌍신동	443-2	전력주	죽당선63R1L5	14	본	1		한국전력공사	
11	쌍신동	443-2	전력주	죽당선69R1L4R1	8	본	1		한국전력공사	
12	쌍신동	1-3	전력주	죽당선63R1L4R4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3	쌍신동	424-6	전력주	죽당선63R10L4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4	쌍신동	5-8	전력주	죽당선63R10L4L1	8	본	1		한국전력공사	
15	쌍신동	산1-12	전력주	죽당선63R10L5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6	쌍신동	산1-12	전력지주	죽당선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7	쌍신동	5-1	전력주	죽당선63R10L6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8	쌍신동	3-1	전력지주	죽당선	10	본		1	한국전력공사	
19	쌍신동	4	전력주	죽당선63R10L8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0	목천리	933-2	전력주	죽당선63R15L3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1	목천리	91-5	전력주	죽당선63R15L4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2	목천리	90-5	전력주	죽당선63R15L5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3	목천리	88-3	전력주	죽당선63R15L6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4	목천리	143-1	전력주	죽당선63R15L7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5	목천리	1017-15	전력주	죽당선63R17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6	목천리	989-1	전력주	죽당선63R16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7	목천리	1019-1	전력주	죽당선63R15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8	목천리	991-3	전력주	죽당선63R14	10	본	1		한국전력공사	
29	목천리	991-3	전력주	죽당선63R14L1	10	본	1		한국전력공사	

30	목천리	990	전력주	죽당선63R15L1H 1	10	본	1		한국전력공사	
31	목천리	990	전력주	죽당선63R15L1	10	본	1		한국전력공사	

라. 통신주소서

연번	리	지번	지장물명	통신주번호	단위	수량	소관청	비고
1	쌍신동	443-1	통신주	쌍신22좌5좌1	본	1	(주)KT	
2	쌍신동	443-1	통신주	-	본	1	(주)KT	
3	쌍신동	443-1	통신주	-	본	1	(주)KT	
4	쌍신동	443-1	통신주	-	본	1	(주)KT	
5	쌍신동	산1-1	통신주	-	본	1	(주)KT	
6	쌍신동	산1-1	통신주	-	본	1	(주)KT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8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쌍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주)세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수도권과 경남권에 집중된 자동차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양시 및 당진시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과 더불어 중부권 자동차 복합단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개요

- 개발방법 : 쌍신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민간개발
- 주요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치 : (기정)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변경)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

나. 면적 : (기정) 225,755㎡  
(변경) 227,152㎡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8년 ~ 2023년  
(변경) 2018년 ~ 2025년

##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25,755	증) 1,397	227,152	100%	
공업지역	소 계	225,755	증) 1,397	227,152	100%	
	일반공업지역	225,755	증) 1,397	227,152	100%	쌍신일반산업단지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	일반공업지역	225,755m <sup>2</sup> → 227,152m <sup>2</sup> (증, 1,397m <sup>2</sup> )	-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노선수	연장 (m)	면적 (m <sup>2</sup> )
합계	기정	4	1,437 (3,209)	25,022 (31,260)	-	-	-	2	1,006	20,244	2	431 (3,209)	4,778 (31,260)
	변경	4	1,437 (3,209)	25,172 (31,253)	-	-	-	2	1,006	20,401	2	431 (3,209)	4,771 (31,253)
중로	기정	3	1,240	23,228	-	-	-	2	1,006	20,244	1	234	2,984
	변경	3	1,240	23,385	-	-	-	2	1,006	20,401	1	234	2,984
소로	기정	1	197 (3,209)	1,794 (31,260)	-	-	-	-	-	-	1	197 (3,209)	1,794 (31,260)
	변경	1	197 (3,209)	1,787 (31,253)	-	-	-	-	-	-	1	197 (3,209)	1,787 (31,253)

※( )는 금회 사업계획으로 변경되는 사업구역 외 소로3류(국지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쌍1	19	집산 도로	438	소로3-2-2	중로2-쌍2	일반	-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면적 변경
변경	중로	2	쌍2	19	집산 도로	568	중로2-쌍1	중로3-쌍1	일반	-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면적 변경
기정	중로	3	쌍1	12	국지 도로	234	중로2-쌍2	남측구역계 쌍신동 9-8	일반	-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변경	소로	3	2-2	6~15	국지 도로	3,209	중로1-4	대로2-2	일반	-		면적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쌍1	중로2-쌍1	• 면적: 9,091㎡ → 9,169㎡ (증, 78㎡) (경계 변경없음)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중로2-쌍2	중로2-쌍2	• 면적: 11,153㎡ → 11,232㎡ (증, 79㎡) (경계 변경없음)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소로3-2-2	소로3-2-2	• 면적: 1,794㎡ → 1,787㎡ (감, 7㎡) (경계 변경없음)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쌍1	주차장	• 기정: 쌍신동 464번지 일원 • 변경: 쌍신동 464-1번지 일원	2,072	-	2,072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1개소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쌍1	주차장	• 위치: 쌍신동 464번지 일원 → 쌍신동 464-1번지 일원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2) 공간시설

### 가) 공원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쌍1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쌍신동 산1-1번지 일원</li> <li>• 변경: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li> </ul>	1,934	-	1,934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1개소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쌍1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li> </ul>

### 나) 녹지

####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로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33,657	증) 152	33,809		4개소
변경	쌍1	녹지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쌍신동 산1-1번지 일원</li> <li>• 변경: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li> </ul>	19,095	증) 156	19,251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변경	쌍2	녹지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쌍신동 2번지 일원</li> </ul>	9,232	증) 2	9,234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기정	쌍3	녹지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성면 목천리 143-1번지 일원</li> </ul>	2,474	-	2,474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변경	쌍4	녹지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우성면 목천리 991-2번지 일원</li> <li>• 변경: 우성면 목천리 991-5번지 일원</li> </ul>	2,856	감) 6	2,850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쌍1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li> <li>• 면적 : 19,095㎡ → 19,251㎡ (증, 156㎡) (경계 변경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li> </ul>
쌍2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9,232㎡ → 9,234㎡ (증, 2㎡) (경계 변경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li> </ul>
쌍4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우성면 목천리 991-2번지 일원 → 우성면 목천리 991-5번지 일원</li> <li>• 면적 : 2,856㎡ → 2,850㎡ (감, 6㎡) (경계 변경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li> </ul>

### 3) 방재시설

#### 가) 우수지

○ 우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쌍1	우수지	저류지	쌍신동 9-9번지 일원	4,261	-	4,261	공주시 고시 제2018-134호 (18.08.16)	1개소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쌍신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li> <li>• 변경: 공주시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li> </ul>	225,755	증)1,397	227,15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 공주시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li> <li>• 면적: 225,755m<sup>2</sup> → 227,152m<sup>2</sup> (증, 1,397m<sup>2</sup>) (경계 변경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li> </ul>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1BL	41,677	42,091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공주시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2BL	45,613	45,968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공주시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	
	3BL	16,204	16,216	공주시 쌍신동 9-1번지 일원	공주시 쌍신동 9-1번지 일원	
	4BL	33,093	33,421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	공주시 쌍신동 산1-12번지 일원	

###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6BL	10,311	10,297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2-5번지 일원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2-5번지 일원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7BL	11,911	11,911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5번지 일원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995-2번지 일원	

### 다) 공공시설용지 (변경)

#### ○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	5BL	2,072	공주시 쌍신동 464번지 일원	공주시 쌍신동 464-1번지 일원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조서

#####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BL 4BL	산업 시설 용지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허용업종</th> <th>중분류</th> <th>업 종</th> </tr> </thead> <tbody> <tr> <td></td> <td>H52</td> <td>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허용업종	중분류	업 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허용업종	중분류	업 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4층(20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2BL	산업 시설 용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허용업종</th> <th>중분류</th> <th>업 종</th> </tr> </thead> <tbody> <tr> <td></td> <td>E383</td> <td>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허용업종	중분류	업 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허용업종	중분류	업 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E383)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4층(20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3BL	산업 시설 용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지역 내 허용 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허용업종</th> <th style="width: 20%;">중분류</th> <th style="width: 60%;">업 종</th> </tr> </thead> <tbody> <tr> <td></td> <td>C30</td> <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허용업종	중분류	업 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허용업종	중분류	업 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 4층(20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 나)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6BL 7BL	지 원 시 설 용 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자동차영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시설, 전시장 판매시설(시장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300% 이하
		높 이	• 5층(20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권장</li> <li>•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의 기준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채 권장</li> <li>-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채 권장</li> <li>- 강조색 : 제한 없음</li> </ul> </li> </ul>		

다) 주차장용지 (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5BL	주차장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li> </ul> </li> <li>•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li> </u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5층(20m) 이하
		배 치 (건축한계선)	•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지정(지구단위계획 도면 참조)
		색 채	-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는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8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용 고시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7조3항 규정에 의거 공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공 주 시 장

고유 번호	발행기관	발급기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발급기모델명	비고
421	금학동장	국립공주병원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국립공주병원 1층	2020.10.15	TAPI-8000T	